

공 시 송 달 공 고

군도5호선 도로에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이 무단 설치되어 「도로법」 제73조(원상회복)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였으나 “폐문 부재등의 사유” 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(송달)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. 6. 1.

진 도 군



1. 공고개요 및 공고내용

- 공 고 명: 도로무단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서 통보 공시송달 공고
- 공고기간: 2026. 6. 1. ~ 2025. 6. 15. (15일간)
- 법적근거: 도로법 제61조, 제73조
- 공고장소: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- 공시송달 대상

소재지	무단점유현황				비고
	행위자	주 소	점유내용	처분내용	
지산면 보전리 344-13 도로(보전로 218 앞 도로변 가설건축물)	윤**	주소불명	컨테이너 1동	원상회복명령	-

2. 유의사항

- 상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**2026. 6. 15.(금)**까지 원상회복을 이행하시어, 그 결과(사진 등)를 진도군청 건설과 토목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기간 내 원상회복 미이행 시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라 진도군에서 대집행(철거 및 폐기물 처리)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며,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3. 기타

-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.
- 문의사항 및 위치는 진도군청 건설과 토목팀(☎061-540-347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제 2026-001 호

행정대집행 계고서

성명(단체명) 윤-- 귀하

주소: 주소 불상

건설과-4612(2026.2.12.)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가설건축물을 2026년 3월 31일까지 가설건축물 원상회복(철거)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, 『도로법』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하였으며 도로변 미관을 저해하며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**2026년 6월 15일까지 반드시 철거**될 수 있도록 도로법 제73조(원상회복)제4항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진도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(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)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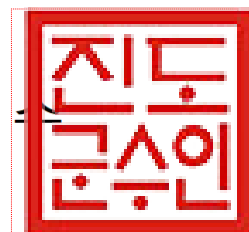
※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위치	대상 또는 종류	수량	대집행 방법
전남 진도군 지산면 보전리 344-13	가설건축물	1동	진도군 자체 철거 집행 - 철거 및 원상회복 (필요시 제3자 대집행)

2026년 6월 1일

진도군



□ 위치도 및 현장사진

지산면 보전리 344-13 도(군도5호선)



현 장 사 진

